

[불임]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귀하는 당사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성실히 해주길 바라며,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 질문사항의 기간 산정일은 임용일을 기준으로 적용
- *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 해당 번호에 “Y” 표시

1. 귀하는 현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2. 귀하는 현재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3. 귀하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4. 귀하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5. 귀하는 현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6. 귀하는 현재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7. 귀하는 현재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의** 경우에 해당합니까?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8. 귀하는 현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9. 귀하는 현재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까?

10. 귀하는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11.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에 해당합니까?

<아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① 해당되지 않음 ② 해당됨

본인은 본 자료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이해하고, 상기의 답변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 취소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수집·제공·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